

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 목 차 ●●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1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류	8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2-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15
2-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15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17
2-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7
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36
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및 부여계약서 작성	40
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47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49
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의	50
3-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1
3-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54
3-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58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61
4-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개관	62
4-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제도	64
4-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65
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69
4-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73

Q&A83

부록91

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9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96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99
4. 소득세법 관련 규정	100
5.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101
6. 상법 관련 규정	107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임직원 등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익을 주주와 나눠가질 수 있는 **주식에 근거한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의 개념
- 또한,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장래 주주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와 이해(利害)의 동일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하는 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임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여받는 시점에서 이미 양(+)의 가치를 지님

▶ 장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점에서 부여받는 순간에 가치가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서 주식을 그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보게 됨
- 또한 주식의 양도시점에서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시세가 행사가격 보다 더 오르게 되는 경우 임직원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 실현 가능

참고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이란?

- ▶ 부여시점 : 계약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
- ▶ 행사시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
- ▶ 양도시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시장에 매각하는 시점
- *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
- *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및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예시

- A 주식회사가 X에게 재임기간 2년 후부터 3년 이내에 A 주식회사의 주식을 5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주식이 1만원으로 올랐다면, X는 이를 5천원에 매수하여 5천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과 임직원 등의 보수 또는 임금과의 비교

-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자본거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잠재적 주식'(potential stock)으로서의 의의도 가지며 동시에 임직원 등의 임무수행 내지 근로의 대가라는 의의도 함께 지니고 있음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중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 내용은 임원에 대한 보수 문제의 일부라 할 수 있음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판결)
- 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 벤처기업의 임원(이사·감사)과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에 정한 보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과 다른 점**은 아래와 같음

- 주식시장의 침체 등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늘 상회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임직원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상법상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임금과는 구별됨

- 임직원 등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므로 **제3자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지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까닭에 **행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주가(株價)가 회사의 성과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임무수행과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용

- 기업이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데 대한 **보상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보상, 현금지급에 의한 보상, 주식발행을 통한 보상이 있음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이나 부여받는 임직원 등의 입장에서 이하와 같은 **효용**이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보상의 경우 그 부여 시점에서 장래에 신주를 사거나 자기주식 혹은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것이므로, 보상을 위해 당장 자금조달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
 - **(임직원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그 행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야기하지 않음
 - ② **현금지급에 의한 보상**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임직원 등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 ③ **주식발행을 통한 보상**의 경우 기업 내부의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신주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구 주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제혜택이 역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용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근거가 되기도 함

■ 주식매수선택권 도입의 장점과 단점

[기업의 입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
 - 임직원 등과 주주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으로서 기능함
 - 임직원 등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고취**하고, 사실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기업의 실적에 연동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짐
 -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그 결과 생산성을 끌어올려 기업의 내재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됨
 -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는 **추가적인 금전부담없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적대적 기업매수(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회사경영에 기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

- 주가상승이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시장 분위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상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주가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게 될 위험**이 있음
-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목표로 재임(재직)기간 중에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에 몰입**하는 등 위험선택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실적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을 할 위험성**도 없지 않음
-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등은 그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적극적인 회사경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회피적인 결정을 할 위험이 있음

[**임직원 등의 입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주가가 부여계약에서 약정된 행사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면 되고 주가가 행사 가격을 상회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어서 **주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등 **절세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여할 주식의 수량을 결정할 때 **공정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임직원 등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음

-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회사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됨
- **재임(재직)기간과 행사기간이 너무 장기**이거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우, 오히려 임직원 등의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의미가 퇴색**함
-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할 여지**가 있으며, 부여받은 후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하지 않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한 이후에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폐단이 발생**함

주식매수선택권 도입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등의 근로의욕 고취 ■ 고정비용을 줄여 우수한 인재 확보 ■ 안정적인 주주 확보 ■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성과 평가의 어려움 ■ 단기업적주의의 병폐 발생 ■ 주식시장의 침체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짐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류

■ 행사요건의 확정여부에 따른 분류

- 주식매수선택권은 ①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②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목적과 현실, 임직원 등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중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①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fixed stock option)은 부여 시점에 행사 가능 수량과 행사가격 등이 확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부여 시점에 여러 가지 조건이 확정되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예시>

- ▶ 예컨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에 시가 5천원의 주식을 후일 행사기간 동안 7천원(행사가격)으로 2만주(행사 가능 수량)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주식이 시가가 1만원이 되었을 때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 6천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임직원 등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기회복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누리게 된다는 점이 단점

- ②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variable stock option)은 부여 시점에 그 결정방식 또는 결정산식만이 고정되어 있을 뿐 **행사 가능 수량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구체적인 행사 가능 수량은 특정한 주가 수준 혹은 내부적 성과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임

- 특정한 주가수준 또는 성과를 목표로 정해 놓고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여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직원 등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됨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예시>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에 회사의 영업연도말 순이익이 전년도 순이익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20%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 이상 증가한 경우 60%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가 상장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정하는 경우가 내부적 성과에 연동하는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전형적인 예임

- 비상장 벤처기업의 내부적 성과에 연동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영업연도별 순이익처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음

■ 근거법률에 따른 분류

[상법에 따른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대상 및 종류** (제340조의2 제1항)

-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양도형**' 및 '**시가차액 보상형**'으로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요건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340조의4)

-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 i)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ii)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iii)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자기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하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 i)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v)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위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 (제542조의3)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장에서 정한 부여대상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또는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1998년 12월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제도 신설**하였다가 1999년 상법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벤처기업법도 용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경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요건 등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됨
 -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벤처기업의 임직원가 외부전문가 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하여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방법’**과 **‘시가차액 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부여대상, 행사가격 등에서 유리하게 운용**
 - i) **부여대상** : 임직원,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대학·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ii) **행사가격** : 시가 이하 권면액 이상으로도 부여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함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구 분	벤처기업법(제16조의3)	상법(제340조의2~4)	상법(제542조의3)
적용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법인(주식회사)	■ 상장회사
부여 대상 및 요건	■ 임직원,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부여자격 여부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 임직원 / 관계회사의 임직원
부여 방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정관규정 → 내부운영규정 제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여대상자와 계약 체결 → 주식부여내용 신고(중소벤처기업부)		■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음
	■ 행사시 신주발행 내지 자기주식 양도,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교부	■ 좌동	■ 좌동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 발행주식수의 10% 이내	■ 발행주식수의 20% 이내
행사 가격	신주발행 교부	■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 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	■ 좌동
	자기주식 교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	■ 실질가액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재임	■ 좌동	■ 좌동
양도/상속 가부	■ 양도 불가, 상속 가능	■ 좌동	■ 좌동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 신고의무 없음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 부여주체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봄**
(벤처기업법 제24조제1항제5호)
- 주주총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된 사항을 설계하는 당사자는 이사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이사회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2-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 부여대상

- 벤처기업은 그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가 수준을 통해 직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주가로 성과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 벤처기업은 초기에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외부(사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벤처기업법은 다음의 외부 전문가에 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
-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의 임직원

■ 부여제외대상

- 대주주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그 부여대상에서 제외됨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 의의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다는 것과 아울러 정관을 등기함으로써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시(公示)하는 효과가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임직원 등의 직무충실성을 높여 기존 주주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부여할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추가 상승이라는 과실(果實)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전단계(前段階)에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미리 규정해 두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임

정관상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관에 아래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참고1)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위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상법 제362조)

- 이사회일을 정하고 1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함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정관변경 주주총회 결의 예시>

- ▶ 의결권 있는 주식 9,000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든 주주가 보유한 주식 6,600주일 경우
- 합계 1,600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 vs 합계 5,000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찬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됨
-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는 4,400주이며, 발행주식총수의 1/3은 3,000주임

[참고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규정(예시)

정 관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0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주식의 시가

⑤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부여방법의 기재*** 필요

*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여 가능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부여 결의시 정관에 따라 부여한 후, 행사시점에서 부여방법 최종 결정 가능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

-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신주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기존에 갖고 있던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자기주식 양도)
-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시가차액 보상)

①-1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주식가치를 희석**시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의 장단점>

-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현금지급으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이 증가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추가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 중 일부가 행사자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 기존 주주(구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같은 지배력의 희석화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기존 주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음

①-2 (자기주식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매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주주에 돌아갈 이익배당을 줄이게** 됨

-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함 (상법 제341조 제1항)

* 자기주식 :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는 것(상법 제341조 제1항)을 의미.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그 명의와 자본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해당 주식을 뜻함

**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준비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자기주식 양도시 단점>

▶ 회사는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언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회사는 행사기간에는 미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행사기간 중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의 보유자가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회사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됨

② (시가차액 보상) 시가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보상되는 금액만큼 회사 재산이 밖으로 유출**됨

■ 변경등기

- 회사설립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으로써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상법 제317조)
 -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14일)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고 그와 함께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변경을 통고한 날로부터 2주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회사설립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받아 이를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함

○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상법 제373조 제1항)

- 주주총회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일시와 개최시각, 개최지와 장소
 - 총 주주의 수와 총 주식의 수, 출석주주와 그 주식 수
 - 의장의 개회선언
 - 의사의 진행요령과 결과
 - *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이유설명, 토론 및 의견의 요지, 표결 등 결의의 방법과 그 결과, 결의의 성립 여부, 결의의 내용, 결의 방법 등
 - 폐회 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추가적으로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인감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상법 제373조 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등에 관하여 **정관에 자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관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관의 하위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참고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예시)

(주)000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제1조 (정의) 본 운영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그 관계법에 정한 주식을 말한다.

제2조 (시행목적)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의 주인의식 함양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
2.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유능한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3.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동기부여
4. 우수인력(임직원, 외부 전문가)의 확보 및 유지
5.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한도) 회사는 회사의 정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 정한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②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 자기주식양도, 시가차액보상 중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일로부터 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0년내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임 내지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② 행사기간 중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을 실시함에 따라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기존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식으로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이 경우 가격조정에서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격} = \text{조정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frac{1\text{주당 발행가격}}{\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할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격} = \text{조정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frac{1\text{주당 주주환급가격}}{\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등의 제한) ①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자, 부여주식의 종류, 부여수량, 행사가격 등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사 〇〇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〇〇일 내에 행사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벤처기업법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〇월 〇일 부터 시행한다.

2-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기본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정관과 등기부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법에 따라 이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여결의를 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 벤처기업법이 인정하는 부여대상자* 유형에 속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 등을 특정**하여야 함

* 부여대상은 2-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참고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름
 - 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신주발행)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자기주식 양도)
 - 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시가차액 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계약시에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서 **부여방법을 결정** 가능
- * 행사시점에서 부여방법을 결정할 때 두가지 이상으로 병용하여 부여할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예시>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신주발행, 자기주식 양도, 시가차액 보상 중 행사시 이사회(주총) 결정**”으로 부여하고 **계약서 명시**
- **행사시점에**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으로 결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그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때는 그 인수가격을 말하며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시가차액을 보상받을 때는 차액산정의 기준을 말함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 가능**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정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일정기간으로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일을 고려한 기간부여, 성과를 연동한 기간부여** 등이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예시>

- ▶(사례1) 일정기간으로 행사기간 부여
 - 2022.03.27. ~ 2027.03.26.
 - 2022.03.30. ~ 퇴직일
 - 부여일로부터 (i) 2년후 40% 행사, 3년후 30% 행사, 4년후 30% 행사
- ▶(사례2) **상장일을** 고려한 행사기간 부여
 -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 2022.11.30과 상장일 중 나중일로부터 3년 이내
- ▶(사례3) **성과를 연동한** 기간설정
 - 누적 매출액 30억 시점 또는 2024.06.10 중 늦은 시점로부터 5년 이내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법 제344조부터 제35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법 제341조에 정한 자기주식 중 정관에 정한 것에 한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에 여분이 남아 있어야 함

<정관변경 주주총회 결의 예시>

-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주이며,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1만주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이며(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이러한 총한도 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은 물론이고 행사로 인하여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도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가 작고 현금흐름이 양호하지 않지만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만 회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를 일반 상법상의 회사에 비하여 높게 설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발행한 벤처기업이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주식총수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함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발행한도 예시>

- ▶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부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를 늘려야함
- ▶ 임직원 등에게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가 자본금감소 및 상환주식의 상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총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됨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상법 제434조)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者)는 결의의 공정성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가 주주이면서 임직원 등인 경우, 개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판례

-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음(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임직원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판례

- 주주총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빙자하여 임직원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특례

○ 벤처기업은 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간편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이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이사회에 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에 대해 당해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까닭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에서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총수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4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의 성명이나 명칭
- 각 부여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참고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예시)

[참고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예시)

이사회 의사록
(제0기 - 차)

1. 일 시 : 2020년 0월 0일 오전 10 : 00
2. 장 소 : 주식회사 00 본사 회의실
3. 출석현황 : 이사총수 0명 중 0명 출석
 감사총수 0명 중 0명 출석

의장 000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가결하다.

- 다 음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1) 소집일시 : 2020년 0월 00일 오전 10:00
- 2) 소집장소 : 본사 회의실
- 3) 안건 : 이사 000, 직원 000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

- 1) 부여대상 : 2020년 0월 00일 현재 **변호사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명단 : 붙임)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일 : 2020년 0월 0일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 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2020년 0월 현재 발행주식총수 00000의 %)
- 4) 행사가격 : 금 0000원

- 5) 부여방법 : 신주발행 내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회사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
-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2020년 0월 0일부터 2020년 0월 0일
- 7) 기타 : 붙임 자료
 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1부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1부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명단) 1부

이상과 같이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0시 00분)

금일 결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다.

2020년 0월 0일

주식회사 00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이 사 000 (인)
이 사 000 (인)
감 사 000 (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를 하였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다투 수 있음
 - 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불과 2월에 지나지 않음
 - ②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결의무효확인 소, 부존재확인 소 모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의 다투는 소의 유형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 소	결의부존재확인 소
원고	주주, 이사, 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피고	벤처기업		
청구원인	결의절차의 하자 결의내용 정관위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	결의절차의 중대한 하자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제한없음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결과 주주총회가 취소되거나 무효 혹은 부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경우,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임

판례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동 시행령 제11조의3 제8항)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에 부여당시의 **정관사본,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
 - 이사회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참고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양식
-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부여 결의 후 **중소벤처24(www.sme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함
 - * 문의 : 벤처기업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 이때, 신고기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급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반 중소기업이었을 때 부여하였거나,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되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기간 중에 부여한 경우는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참고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양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5항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작성방법: 뒤쪽 참조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반사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	
	벤처기업확인번호	벤처기업확인일 (유효기간)	(~)	
	전화번호	E-mail		
소재지				
업무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직통번호(내선)	휴대번호	E-mail	
①정관내용	부여주식의종류	* 정관 참조	액면가(권면액)	
	발행주식의 총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부여주식의총수	발행주식총수의 %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임직원 (), 외부전문인력·기관 ()		
	행사기간	*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행사기간'을 기재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사항

1. 주주총회 결의 내용 (주주총회 일자 : 년 월 일)

연번	성명 (명칭)	생년월일	자격	부여방법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시가 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회차 (누적)
1								예 □ 아니오 □	
2								예 □ 아니오 □	
3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합계									

* 부여주식의 종류 :

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및 부여계약서 작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제1호)

판례

- 회사가 일정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다수의 자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여계약은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 벤처기업이 당해 회사의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제39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필요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회사가 사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및 비치

-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벤처기업과 부여대상자의 계약을 통해 정해짐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짐(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참고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시)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시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주발행(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금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의 상환 등으로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등과 같은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되는 까닭에 기존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예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기존의 200%로 늘릴 경우 산술적으로 1주의 가치가 1/2로 하락하므로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덩달아 1/2로 줄어들게 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함

-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제1호는 그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사수량을 조정할 수 없음**
- 이때,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충실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면액(액면가)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 *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그 영업활동의 기반인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음(상법 제417조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상법 제340조의3제4항)

[참고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0년 ○○월 ○○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보통주식 ○○○주(또는 정관 제○조의 종류주식 ○○○주)로 한다.

제2조(스톡옵션 부여방법) “갑”은 정관 제○○조에 따라 “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

※ (사례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방법이 1가지인 경우**

예) 정관 제○○조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방식으로 한다.

(사례2)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예) “갑”은 정관 제○○조에 따라 신주발행, 시가차액보상 방식 중 하나로 “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 최종 부여방식은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3조(부여일) 스톡옵션의 부여일은 2020년 ○월 ○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부여받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수의 조정) ①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스톡옵션의 행사 전에 “갑”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제4조의 행사가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격} = \text{조정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frac{\text{1주당 발행가격}}{\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할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액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text{조정후 행사가격} = \text{조정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cdot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frac{1 \text{주당 주주환급가격}}{\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행사기간) ① 스톡옵션은 2020년 0월 0일 이후 2020년 0월 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중 행사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상장일을 고려한 기간부여, 성과를 연동한 기간부여 가능**

예시 1) 상장일과 2020년 0월 0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0년 이내에 행사

예시 2) 스톡옵션은 누적 매출액 30억 시점 또는 2020년 0월 0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0년 이내에 행사

- ② "을"은 제3조의 부여일로부터 0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하며, 행사시 회사에 재임중이어야 한다. 다만, "을"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항 재임 또는 재직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함**

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연간 행사횟수는 0회로 한다.

- ② "을"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행사신청서 양식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주식수, 행사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2통)하고, 행사가격을 00은행 00지점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갑"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은 행사신청서만 제출한다.

- ③ "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일 이내에 행사가격을 납입해야 하며, "갑"은 "을"이 행사가격 납입을 완료하면 0일 이내에 "을"이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을"에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

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을"은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및 근로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스톡옵션 행사의 효력) "을"은 제7조 제1항의 납입을 한 때로부터 "갑"의 주주가 된다. 단, 납입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인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로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중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양도 및 담보의 제한) "을"은 스톡옵션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① "갑"은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스톡옵션의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1. "을"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제3자에 대하여 상법4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3. "갑"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갑"이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을"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411조(겸임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해임)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을"의 해임을 권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을"(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한한다)을 해임하는 경우
6. "을"(종업원인 경우에 한한다)이 "갑"의 인사규정 제00조, 제00조에 위반하여 징계 또는 상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7. "을"이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갑"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의 존부 또는 이사회회의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을"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 이사회결의는 취소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상법 제385조(해임)에 의해 "을"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을"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을"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

으며, 당해 소에서 “을”을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하며, “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부존재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합병, 분할로 인한 승계) ① “갑”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가 “을”에 대한 주식교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합병결의 후 2주간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한다. 단, 합병이 “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0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다른 회사가 “을”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해야한다.

② “갑”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갑”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가 스톡옵션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분할이 “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0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다른회사가 “을”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 계약의 내용으로 해야한다.

제12조(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규 및 “갑”의 정관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서명날인 및 보관)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월 0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효력

-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및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회사와 부여대상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완성되지만 그 효력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발생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한도를 초과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주식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기대상이 아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에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지 않은 까닭에 어떠한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 완결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주식 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환가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를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4누3733 판결)

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부여취소 사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이를 부여하는 때로부터 행사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계약인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벤처기업법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함
 - 회사가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함부로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소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9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례

-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회사와 부여대상자 사이의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벤처기업법이 적용**

부여취소의 효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함

참고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취소'한다고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취소'가 아닌 '철회'의 효과를 가짐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킴

- 행사시 신주발행 교부를 예정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면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수가 취소된 주식의 수만큼 부활함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여부는 부여받은자의 선택에 따르며, 행사하는 시기는 부여받은자가 행사의사를 벤처기업에 정확하게 알린시기를 말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수하거나 혹은 차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판례

- 주식매수선택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를 가리킴(서울고등법원 2013.9.4. 선고 2012누35407 판결)

- 권한 보유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만큼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반면에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 발생

3-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행사가격 결정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함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 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이하 '부여 당시 시가')와 해당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권면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간주함 (상법 제340조의2제4항제1호 단서)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격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함 (상법 제451조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음(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시가 평가 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주당 시가 =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1\text{주당 평가액} = \frac{\textcircled{1}1\text{주당 순순익가치} \times 3 + \textcircled{2}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함

① 1주당 순순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순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함

$$1\text{주당 순순익가치} = \frac{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text{순순익가치환원율}(10\%)}$$

* 순순익가치환원율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는 바, 현재까지 연 10%임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frac{Ax3+Bx2+Cx1}{6}$$

- ▶ 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순익액
- ▶ B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순익액
- ▶ C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순익액

②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

$$1\text{주당 가액} = \text{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div \text{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제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시가평가 예시>

▶ 업력이 5년인 벤처기업의 2022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아니라고 가정

2022년의 대차대조표

자산가액	부채가액	영업권 평가액	발행주식총수
10억원	8억원	2억원	1만주

2022년의 손익계산서

	2022년	2021년	2020년
순순익액	2억원	1억원	1억원
1주당 순순익액	600원	400원	400원

▶ 시가 산정과정

- 1주당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600 \times 3 + 400 \times 2 + 400 \times 1) \div 6 = 500$
- 1주당 순순익가치 = $500 / 10\% = 5,000\text{원}$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0\text{억원} - 8\text{억원} + 2\text{억원} = 4\text{억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4\text{억원} / 1\text{만주} = 4,000\text{원}$
- 1주당 평가액 = $(5,000\text{원} \times 3 + 4,000\text{원} \times 2) / 5 = 4,600\text{원}$

3-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 행사자

-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보유한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7항)
 - 따라서 입질(入質)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직무충실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

- *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까닭에 오로지 회사와의 부여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오히려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최소 재임(재직)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최소 재임(재직)기간을 너무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여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즉시 주식을 매도하고 퇴사할 여지가 있음
 - 반면에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의 매력도 감소하여 유인으로서 의미가 퇴색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상 재임한 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 *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한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한 규정임

■ 행사기간과 행사기한

- 벤처기업법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음

■ 판례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약정한 퇴임일 또는 퇴직일 이전에 귀책사유 없이 해임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해임된 그날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행사기한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3개월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 행사신청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기한 내에 벤처기업에 행사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청구서 2통을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함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 * 이때 벤처기업의 승낙없이 보유자가 행사 가능
 - ※ (참고6) 행사신청서 예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이 신주발행인지 자기주식 양도인지에 따라 행사 가격을 납입해야 하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신주발행 내지 자기주식 양도형에 한하여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주식을 양도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격 전액을 회사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3항)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주금납입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음
 -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

[참고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본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부 여 일 자 :

부여주식의 종류:

부 여 수 량 :

행 사 가 격 :

행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e - mail주소 :

2020년 0월 00일

주식회사 OO 귀하

첨부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사본가능) 1부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벤처기업의 대응의무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지 않는 한 보유자가 이를 행사요건을 갖추어 행사한 경우 그 행사에 응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에 따른 행사효과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는 아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금을 입금한 날 주주가 됨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10)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행사신청을 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행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총액이 증가**하므로 그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함
 - * 납입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
-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는 아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납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양도하여야 함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자기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됨
 -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 *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배당가능한 이익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어야 함(상법 제341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가 주주로 되는 시기는 주식양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9항)
- **시가차액 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는 이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취득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차액을 현금, 주식 또는 현금과 주식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시가와 행사가격 사이의 차액만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행사가격'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부여법인의 현금(또는 자기주식)을 행사자의 성과급으로 지급
 -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화가 초래되지만 현금으로 추가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임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함
 -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상법 제337조)를 경료하여야 함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주주가 된 자는 당해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340조의5, 제350조 제2항)
 - '주주명부 폐쇄'라 함은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 배당받으 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54조)
 - *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를 다투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하에 따라 다투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었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제429조)로 다투어야 함

▶ 참고 '신주발행무효의 소' 란?

- ▶ 신주발행의 무효라 함은 신주발행의 조건이나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어 발행된 신주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임
-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음(상법 제429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이 양도되었거나 시가차액의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내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로 다투어야 함
 -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불과 2월에 지나지 않아(상법 제376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사실상 제기할 수 없음**
 -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상법 제380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기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에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하자 이외의 사유로 행사효과를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
 - 이 경우에 제기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주장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판결의 효력에 기판력이 없음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4-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개관

법인세법

- 비상장 벤처가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쉽게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소득세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 그 행사가격이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이유가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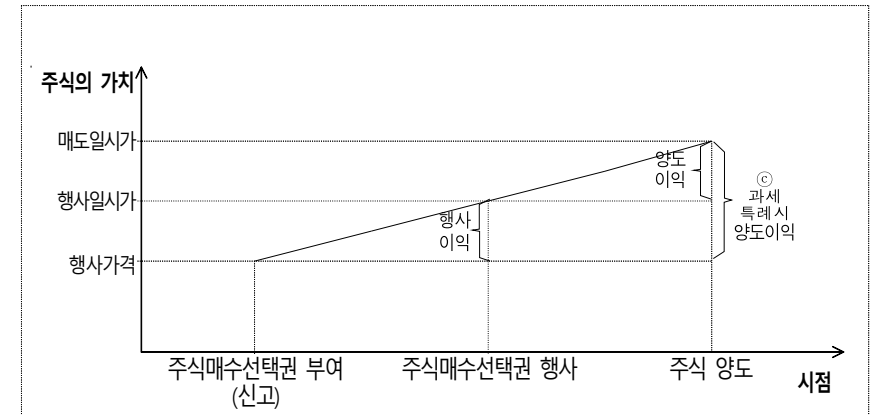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

- 벤처기업으로부터 근로제공 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근로제공 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은 것인지 아니면 퇴직후에 행사하여 얻은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조세특례제한법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행사기한 내에 행사함으로써 주식 혹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데, 만약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를 통해 처분이익을 취득함

주식매수선택권의 시점별 이익의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이익이 결정된 후에 이를 과세 관련하여 유리하게 취급함으로써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세제혜택이 일종의 유인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능대상자 모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하와 같이 3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일정금액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특례**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③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 *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4-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제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은 자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벤처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손비(損費)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해당금액
 - i)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금액
 - ii)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과 같은 지분(持分)을 직접 부여하거나 그 지분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결제하는 것
- 벤처기업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일종의 현물보상급여 (fringe benefit)를 취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여하는 회사가 손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의 수입시기와 부여법인의 손금산입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서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됨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 판례**

 - 통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함(서울고등법원 2006.12.07. 선고 2004누17497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이었던 자가 재임(재직)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는 대신에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임(재직) 중에 지급받는다면 그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퇴직 후에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 소득세 비과세제도의 내용 및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

-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한다.

* 이때 행사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자**에게 업무의 대가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이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음**
 - * 개인사업자로서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가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과세의 대상임**
-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이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권리행사이익의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 세법상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타의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일정 한도를 정한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재입 또는 재직기간 동안에 형성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시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여 일시에 과세함**에 따라 임직원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아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행사이익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 비과세혜택 이용절차

-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시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2항, 동 시행령 제14조의2)
- 납부특례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참고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 명세서

[참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분할납부제도의 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을 이하의 방법으로 **분할납부 가능**. 단,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동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음**
 -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액 산정 계산 >

$$\left[\begin{array}{l} \text{해당 과세기간의} \\ \text{종합소득금액에} \\ \text{대한 결정세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 \text{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 \text{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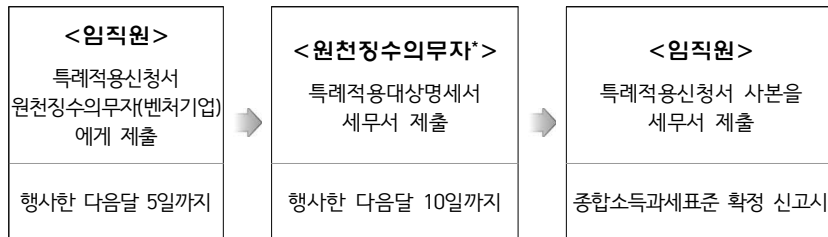
*이때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소득세를 분할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제도의 이용절차

-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벤처기업)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3항, 동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항·제4항)
 - 위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벤처기업)**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벤처기업 임직원이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중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2항,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분할납부 신청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임

※ (참고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류

[참고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 청 인		원천징수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원천징수 제외	[] 분할납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 방법

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원천징수를 제외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에 표시하며,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행사이익	납부특례신청내용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정의 및 요건

- '적격주식매수선택권'(qualified stock option)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뜻함
- 동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참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두는 이유는?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과도한 자본소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이익이 사외(社外)로 유출되는 것은 막고 이익의 왜곡된 흐름을 감소시키기 위함
-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임직원에서 제외되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부여 및 행사요건**을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①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시가이하로 부여하기 위한 조건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 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ii)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 * 계산식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②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않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이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함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 **과세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양도하는 시점으로 이연(移延)하는 효과 (과세이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이하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는 과세연도는 이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5항,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8항)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이하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행사일부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됨
 - 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i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iii)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됨

과세특례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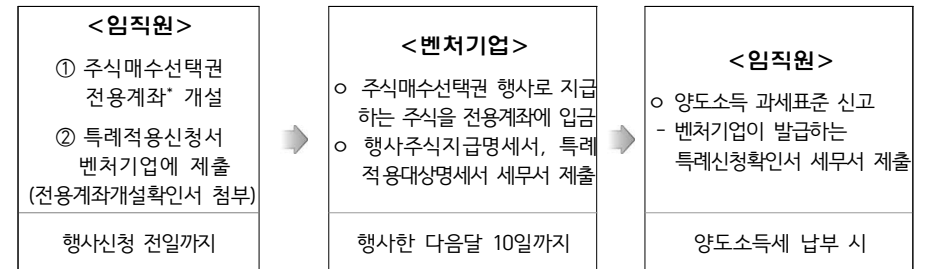
-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6항,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라고 정의함(자본시장법 제8조)
 -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는 **증권회사에 개설하는 게 일반적임**
(증권회사는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머지 금융투자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임)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참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함
 -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 ii)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 i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 iv)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7항)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절차>



*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이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참고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서류

[참고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 청 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번 호	평가기관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벤처기업 확인내역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 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6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계좌 내용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개설변경 내용		당초	변경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변경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제출 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X 분기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일련 번호	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계좌번호	⑪ 벤처 기업명	⑬ 분기 초	증가	감소				⑰ 분기 말	
	⑥ 주민 등록번호	⑧ 거주지 국	⑨ 거주지 국 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⑭ 입고	⑮ 이체	⑯ 인출	⑰ 양도	⑱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Q & A

I.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Q1 벤처기업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요?

A1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벤처기업,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벤처의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II.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Q2 벤처기업법에 속한 사외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리고 계약직 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A1 벤처기업법은 '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도 명백하게 '임원'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속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임원에 포함됩니다.

예시)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어 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도 '임원'을 '이사 및 감사'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정의

집행임원은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 중에 선정)를 갈음하는 기관으로 **집행임원도 임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은 직원의 유형에 관하여 근로형태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3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A1 현행 벤처기업법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 종업원에 대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벤처기업법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여할 능력**이라는 표현은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4 A 벤처기업 회사의 이사가 완전자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A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A1 어느 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하여 대상기업의 100%의 소유지분율을 가지는 경우 어느 기업을 '완전모회사'로, 그리고 그 대상기업을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완전자회사의 이사는 부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에서 퇴직하고 **완전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대표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부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사안과는 달리 A 벤처기업이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인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가 된 경우에는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A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에게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A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미 부여 받은 자에게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총회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직원 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시가차익을 주주와 나눠가질 수 있는 주식에 근거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굳이 **1회 부여로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보유자가 행사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총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Q6 A 벤처기업은 주주와 임원이 모두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기업입니다. 저는 A 벤처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벤처기업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 임직원에게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벤처기업 임직원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542조의8제2항제5호 및 제6호)

따라서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불가**합니다.

Q7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직원 등에게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요?

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회사가 사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회사와 부여대상자 간의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항을 취소하고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III.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Q8

A 벤처기업의 자회사인 B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A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당시에는 A사가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A사가 B사의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현재 B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만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한가요?

A | 벤처기업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산하에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이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에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벤처기업법은 **관계회사의 직원을 당해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당시에는 관계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관계회사라는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벤처기업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더이상 관계회사의 직원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사가 벤처기업의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벤처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당초 벤처기업과 약정한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9

A 벤처기업이 B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당수를 인수하여 합병상 모회사가 되었고, A사는 B사의 임직원에게 시가차액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B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A사가 B사의 임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한 후에 B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보전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 벤처기업법은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정관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한 주가차액을 자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169 판결 참조)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시에 시가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타인인 관계회사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모회사인 **벤처기업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를 함에 따라 **모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약정**을 하는 것이 모회사 이사가 **배임죄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Q10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문을 오랫동안 해 온 교수로서 시가차액 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약정한 행사기간 동안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시가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가차액을 행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의무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사회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제4항)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권한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되므로 벤처기업을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가차액 지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지만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부 록

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3.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그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 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 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text{주당 가액} =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div 3\text{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의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

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가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부터 19. 까지 <생략>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이하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부터 18.까지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 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

당하는 자

-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3.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3.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②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관련 규정

1.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금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부터 4.까지 <생략>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부터 ⑤까지 <생략>

2. 상법 시행령

-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